

감 사 위 원 회

시 정 요 구

제 목 000000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부적정

관 계 기 관 인재개발원

내 용

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19조(○○○○○○위원회) 제1항에 “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, 성과평가, 교육훈련과정의 신설·폐지 등 교육훈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, 교육훈련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○○○○○○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, 제2항에는 “제1항에 따른 ○○○○○○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

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 제1항에는 “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,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전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심사수당을,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그리고, 「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학칙」 제5조(○○○○○○회) 제3항에 “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고 규정되어 있으며, 제5항 제1호에는 “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당해연도 교육훈련계획을 보완·수정하기 위해 상·하반기 각 1회 소집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,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○○○○○○위원회’의 운영을 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학칙」을 준수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는 2014.11.25. ‘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학칙’ 개정이후 2018. 4월 현재까지 아래 [표1]과 같이 ‘○○○○○○위원회’를 운영하면서, 참석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서울시 소속 공무원 10명 중 8명에게 1인당 200천 원씩 총 1,600천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,

또한, 학칙 개정이후 매년 상·하반기 각 1회, 연 2회의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연 1회씩만 개최하여 학칙을 위반하였으며,

【표1】 최근 4년간 ○○○○○○위원회 참석위원 및 수당 부당지급 현황

(단위 : 원, 명)

연 번	개 최 일 시	회 의 참 석 외 부 위 원 수	회 의 참 석 서 울 시 직 원	서 울 시 직 원 수 당 부 당 지 급 액	업 담 무 자	비 고
1	2014.12.09	4	2	400,000	갑	1인당지급액 20만 원
2	2015.11.12	2	3	600,000	갑	"
3	2016.12.19	5	3	600,000	을	"
4	2017.12.21	4	2	0	병	-
합 계		15	10	1,600,000		

그리고 ‘○○○○○○위원회’의 위원장은 심의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에도, 아래의 [표 2]와 같이 2014.12.16. ○○○, ○○○ 2명만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, 그 이후 임기가 2년 임에도, 연임으로 인한 재위촉 또는 신규위원 위촉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, ‘○○○○○○위원회’ 운영에 대하여 소홀하였다.

【표2】 최근 5년간 ○○○○○○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촉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	외부위원수	외부위원 명단	위촉여부	업무 담당자
2013	5명	무, 기, 경, 신, 임, 계	-	정
2014	8명	무, 기, 경, 신, 임, 계, 갑자, 을자	갑자, 을자 2014.12.16. 위촉	갑
2015	8명	무, 기, 경, 신, 임, 계, 갑자, 을자	미위촉	갑
2016	8명	무, 기, 경, 신, 임, 계, 갑자, 을자	미위촉	을
2017	8명	무, 기, 경, 신, 임, 계, 갑자, 을자	미위촉	병

【 조치할 사항 】

인재개발원장은

- ① 부당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하시고,
- ② ○○○○○○위원회' 운영에 있어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시정요구)